

평창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5
----------	-----

제출년월일 : 2004. 09.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34조(개정 2002.1.19) 및 동법시행규칙 개정 (보건복지부령 제243호, '03.4.1) 시행에 따른 평창군건강증진법위반자에 대한과태료부과대상 및 부과금액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안 제2조(과태료부과기준) 【별표 1】 개정

1.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상향조정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 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설치이외의 장소에 설치하여 판매한 자
- 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

2.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규정 신설

- 가.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판매한 자
- 나.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상향조정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 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관계부처승인 : 해당없음.

라. 입법예고 : 평창군공고 2004-262호(2004.7.12)

마.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평창군조례 제 호

평창군국민건강증진범위반자에 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국민건강증진범위반자에 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과태료부과기준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만원)				비고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1.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판매 한 자 (법 제34조제1항제1호)	경 고	100	200	300	
2.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 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당 해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 (법 제34조제1항제2호)	경 고	100	200	300	
3.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판매 한 자 (법 제34조제2항제1호)	경 고	50	100	200	
4.법 제9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 하여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 하지 아니한 자 (법 제34조제2항제2호)	경 고	50	100	200	
5.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34조제2항제3호)	경 고	50	100	200	

신 · 구 문 대 비 표

부 과 대 상	현 행			개 정			
	부과금액(만원)			부과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1.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판매 한자 (법 제34조제1항제1호)	30	60	100	경 고	100	200	300
2.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 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당 해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 (법 제34조제1항제2호)	30	60	100	경 고	100	200	300
3.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판매 한 자 (법 제34조제2항제1호, 신설)	-	-	-	경 고	50	100	200
4.법 제9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 하여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 하지 아니한 자 (법 제34조제2항제2호, 신설)	-	-	-	경 고	50	100	200
5.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34조제2항제3호)	20	50	100	경 고	50	100	200

【관계법령발취문】

국민건강증진법

- 第9條 (禁煙을 위한 措置)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조자등에 대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담배에 관한 광고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13, 2001. 4. 7, 2002. 1. 19>
- ②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장소 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정하는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신설 2003. 7. 29 법6952>
- ④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흡연구역에 환기시설 및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13, 2002. 1. 19>
-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
-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 1. 19>

- 第28條 (보고·檢査) ①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7조제1항·제8조제3항 및 제4항·제9조제1항 내지 제4항 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의 사업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13, 1999. 2. 8>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第34條 (過怠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9. 2. 8, 2002. 1. 19>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2. 제9조제4항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
 3.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2. 1. 19, 2003. 7. 29〉

1.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2. 제9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15조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장소) ①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미성년자등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19세미만의 자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
2.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의 내부
3.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다만,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자가 19세미만의 자에게 담배자동판매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장소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미성년자등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장소에 대하여는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6조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이하 “공중이용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 10. 28, 2003.4.1〉

1. 연면적 3천제곱미터이상의 사무용건축물 및 2천제곱미터이상의 복합건축물
2. 공연법에 의한 객석수 300석이상의 공연장
3. 학원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으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의 학원
4.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동법에 의한 상점가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5.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
6.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교사
7.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의한 체육시설로서 1천명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8.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 제7조·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9. 사회복지법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10.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관련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1.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목욕탕
12.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게임제공업소 및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소
13. 식품위생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영업장의 넓이가 1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및 일반음식점영업소
14. 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만화대여업소
15. 정부청사관리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사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청사
16. 영유아보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제7조 (금연구역의 지정기준 및 방법) ①공중이용시설중 청소년·환자 또는 어린이에게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시설 소유자등은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제6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교사
2. 제6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3. 제6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외의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당해 시설중 이용자에게 흡연의 피해를 줄 수 있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무실·회의장·강당 및 로비
2.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의 객석, 관람객 대기실 및 사무실
3.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강의실, 학생 대기실 및 휴게실
4.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중 상품의 판매에 제공되는 매상 및 통로
5. 제6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의 현관 및 로비
6. 제6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중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강의실, 휴게실, 강당, 구내식당 및 회의장
7. 제6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관람석 및 통로
8. 제6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거실, 작업실, 휴게실, 식당 및 사무실

9. 제6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관련시설 및 교통수단중 공항·여객터미널·역사 등의 승객 대기실 및 승강장, 국내선항공기, 선실, 철도의 차량내부 및 통로, 전철의 지하역사·승강장 및 차량,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
 10. 제6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의 탈의실 및 목욕탕 내부
 11. 제6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게임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설비제공업소의 영업장 내부중 2분의 1 이상의 구역
 12. 제6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영업소의 영업장 내부중 2분의 1 이상의 구역
 13. 제6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만화대여업소의 영업장 내부중 2분의 1 이상의 구역
 14. 제6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청사의 사무실 및 민원인 대기실
 15. 제1호 내지 제14호의 시설에 설치된 승강기의 내부, 복도, 화장실 그 밖에 다수인이 이용하는 구역
-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등이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전체가 금연구역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등이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금연구역 또는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이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표시 및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